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4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E

원고보조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2. 2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532783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접수 제55471호로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면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8. 9.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만원, 보증기간 2022. 8. 9.까지로 정하여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억원을 대출기한 2022. 8. 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2. 1. 중소기업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합계 86,023,715원(= 원금 8,500만원 + 이자 1,023,71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A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 1)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동남쪽 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2. 접수 제54233호로 본인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021. 2. 15.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A는 2019. 11. 15.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원 2019. 11. 20. 접수 제55471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A는 제1심 계속 중인 2021. 4. 12.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196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21. 5.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및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21. 9. 29. 종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세권은 A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설정계약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A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는 위 행위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정계약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소액대출 등의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와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않고, 종전에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A의 채무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A로부터 대출을 요청받고, 이 사건 전세권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2019. 11. 15. A에게 3,000만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 변제기 2020. 2.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전세금이 1억원인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대부업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피고가 A에 대하여 부당한 대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 이후 A에게 추가로 2019. 12. 21. 700만원, 2020. 3. 2. 200만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 331㎡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3)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168.78㎡
1층 141.78㎡
2층 153.18㎡
3층 153.18㎡
옥탑1 11.25㎡

끝,

